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7. 7 선고 2021가단1051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섭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1. 6. 23.

판 결 선 고 2021. 7. 7.

주 문

1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5. 25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20,326,973원과 이 중 20,122,950원에 대하여 2020. 11. 24.부터 2021. 7. 7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0. 5. 29. 접수 제136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1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3. 피고 2에 대한

청구 :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홍성욱

별지